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39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양부남・김한규・김현정

박균택 • 박수현 • 안도걸

윤호중 • 이광희 • 전진숙

정진욱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 7. 18. 공포, 2023. 10. 19. 시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 선거운동 기간・방법 및 제재 등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필요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

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선거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지되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및 중지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5조 등),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78조제7항ㆍ제78조의2 신설),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의 중지 근거와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81조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

- 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 나.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및 제78조의2 신설).
- 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 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 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법률 제 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산림조합법」에"를 "「산림조합법」, 「신용협 동조합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이사장선거"를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사장선거"를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를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한다.

제35조제5항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

협동조합법 | 에"로 한다.

제36조 중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중앙회"를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금고 및 중앙회"로 한다.

제43조 중 "2일"을 "3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제12호"를 "제66조제2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를 "제66조 제2항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로 한다.

제7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 조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 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를 제82조로 하고,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u>「산림조합법」에</u> 따른	「산림조합법」, 「신용협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	<u>동조합법」에</u>
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	7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	
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
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협동조합법」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8.	(생	럌)
().	1.72	- i /

-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간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 2. (생략)
 - ② (생략)
-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 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 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단서 신설>

- ② ~ ⑥ (생 략)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 ①·② (생 략)
 -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현행과 같음)
제13조(선거기간) ①
<u>,</u>
1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
협동조합법」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선거일) ①
다만, 「신용협동조합
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
<u>요일로 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 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 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 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 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 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1.	
	~~~~~~~~~~~~~~~~~~~~~~~~~~~~~~~~~~~~~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이사장선거
2.	
	이시자서가 만 「시
	<u>이사장선거 및 「신</u> 9.청도ス하버 게97고게2하
	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초하에서 서츠하는
	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b>^</b>	<u>이사장선거</u>
3.	,

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 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 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 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 · 제28조 ·제29조·제30조 및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 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 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 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 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 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 저 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

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새마을금고법」 및 「신
용협동조합법」에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
금품 제공제한)

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 지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 7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
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금고 및 중앙
<u> </u>
·.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u>3일</u>
제57조(적용 제외) ①

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일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저 (생 략)

<신 설>

제66조제2
항제12호
②
<u>제66</u>
조제2항제8호·제10호·제12호
<u>· 제13호</u>
세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재정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세
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

① (생 략) <신 설>

<신 설>

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 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 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 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 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 투표를 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 동은 이를 중지한다. <u>제81조</u> (생 략)

<u>제82조</u> (현행 제81조와 같음)